

## 1. 개정이유

응급의료기관이 응급의료기관 이용자에게 수용능력 등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자와의 통신체계를 관리하도록 하는 취지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110호, 2025.11.11.)됨에 따라 법률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한 1) 응급의료기관의 수용능력 확인에 필요한 시설, 인력 및 장비 등의 운영상황 통보에 관한 사항, 2) 응급의료 전용회선에 관한 사항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887호, 2025.4.1.)됨에 따라 법률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한 응급의료 실태조사의 내용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또한, 중증응급질환 중심의 응급의료 전달체계를 마련하고 그에 대한 진료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 기준에 응급실·의료기관 진료기능을 규정하고, 인력·시설·장비 기준도 정비하려 함.

## 2. 주요내용

- 가. 응급의료 실태조사의 내용, 방법 및 공표 등을 정함(안 제5조의2)
- 나. 응급의료기관이 중앙응급의료센터에 통보해야 하는 정보 항목과 절차를 정함(안 제18조의2)
- 다. 응급의료기관 전용회선의 기준, 운영방식 및 보건복지부의 관리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39조의3)
- 라.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응급실 및 의료기관에서의

진료기능을 규정하고, 인력·시설·장비기준을 조정(안 별표 5의2 및 별표 7)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응급의료 실태조사) ① 법 제13조의7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응급의료 수요 및 응급의료서비스 이용 형태 등에 관한 사항
2. 응급의료기관등의 시설, 장비 및 인력 등의 현황에 관한 사항
3.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구급 활동에 관한 사항(「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구급활동일지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구급활동에 관한 세부 상황표, 그 밖에 구급활동상황 기록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4. 그 밖에 응급의료 정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태조사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응급의료 관계 연구기관, 법인·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실태조사는 문헌조사, 통계조사, 설문조사,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화, 전자우편,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가 완료된 경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해야 한다.

제13조의2제5호 중 “제15조의2”를 “제15조의3제1항”으로 한다.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4까지를 각각 제18조의3부터 제18조의5까지로 하고, 제18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응급의료기관의 운영상황 통보) ① 법 제31조의2제5항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중앙응급의료센터에 통보해야 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응급의료 제공에 활용되는 시설 및 장비의 사용 가능 현황
2. 응급의료 제공을 위한 인력 운영 현황(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당직 응급의료종사자를 포함한다)
3.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수용 능력 및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법 제48조의2제2항에 따라 통보하여야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4. 중증응급질환의 수술 또는 처치 가능 현황
5. 그 밖에 원활한 응급환자 이송체계 운영 및 관리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②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의2제5항에 따라 중앙응급의료센터

로 통보한 정보를 변경하거나 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중앙응급의료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3(응급의료 전용회선 운영 등) ①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라 응급의료 전용회선을 개설·운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24시간 상시 수신 및 발신이 가능할 것
2. 송신인의 전화번호 확인이 가능할 것
3.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자와의 통신 이외의 목적으로 응급의료 전용회선을 활용하지 않을 것
4.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라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자와 통신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기록하여 보존할 것
  - 가. 수용능력 확인을 요청하는 자의 소속과 성명
  - 나. 수용능력 확인 대상 응급환자의 주요 정보
  - 다.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
  - 라. 그 밖에 응급환자 수용능력 확인 및 인계를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법 제48조의3제2항에서 “응급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센터를 말한다.

③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48조의3제3항에 따라 응급의료 전용회선을 개설하거나 변경한 경우 보건복지부에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신고 내용을 소방청장 및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 전용회선의 개설·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응급의료 전용회선의 개설·운영, 담당부서 지정 또는 담당인력 배치, 응급의료 전용회선의 개설 또는 변경의 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별표 5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 제5호다목1) 가)의 의사의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소아전문응급센터에 24시간 소아응급환자 전담 전문의 또는 3년차 이상 레지던트가 1인 이상 상주할 것

별표 6 제5호다목1) 나)의 간호사의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소아응급환자 전용중환자실 및 입원실 인력과 별도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 및 제39조의3의 개

정 규정은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의2]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제13조제2항 관련)

1. 진료기능

가. 응급실 진료(성인 및 소아를 대상으로 한다)

1) 아래의 처치가 24시간 가능하다.

- 기도처치: 기관내삽관, 운상갑상막절개술
- 호흡처치: 기계적 인공호흡, 흉관삽관
- 순환처치: 제세동, 체외심조율, 중심정맥삽관
- 기타처치: 위세척

2) 아래의 촬영(검사)과 판독이 24시간 가능하다.

- CT, MRI, 단순 방사선 촬영, 12유도 심전도, 심복부초음파

3) 중증응급질환의 진단에 필수적인 임상병리검사가 24시간 가능하다.

나. 의료기관 진료

1) 아래의 수술 및 시술 역량을 갖춰야 한다.

- 심장쇼크, 심혈관조영, 심혈관계·호흡기계·신경계·응고장애치료·중독 등 중환자 관리
- 목표체온조절치료, 체외막산소요법(ECMO)
- 뇌·복부 응급수술, 뇌·복부혈관조영
- 위내시경, 기관지내시경
- 신장투석, 지속적 신대체 요법(CRRT)
- 인큐베이터 치료, 신생아 중환자 관리

2)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역량을 갖추고 해당 중증응급질환으로 내원한 환자에 대하여 필요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지정 신청일 이전 3년 이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증응급질환군에 속하는 응급환자를 수용한 실적이 있어야 하며 지정일 기준 해당 진료 가능한 진료과목을 갖추고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어야 함

2. 일반 운영기준(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업무)

가.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장은 응급환자의 진료를 위해 응급실과 각 전문진료과목

- 의 당직 인력을 확보하고 관련 부서 간 협력체계를 가동해야 한다.
- 나.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장은 불시에 발생하는 중증응급환자를 수용하기 위하여 중환자실과 일반병동의 예비병상, 수술실 등을 확보해야 하며 의료기관 시설·장비 등 의료 자원이 중증응급환자에게 우선사용 되도록 해야 한다.
- 다.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장은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책임진료를 위하여 중증응급환자 또는 중증응급의심환자를 수용할 자원이 부족한 경우 시행규칙 제18조의 4에 따라 경증 및 비응급에 해당하는 환자를 다른 응급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안내하는 등 중증응급환자를 위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라.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장은 가용가능한 응급의료 자원의 현황, 주요 응급질환별 수용가능 여부, 응급환자의 내원 및 퇴실에 대한 정보를 법 제15조에 따라 중앙응급의료센터로 전송해야 한다.
- 마.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장은 감염의사환자의 선별, 음압격리병상 등 감염예방 시설의 운영, 동선분리 및 감염예방활동, 보호자 및 방문객 출입통제 등 응급실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
- 바.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장은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조치 및 **제18조의4**에 따른 중증도 분류의 지도 및 시행을 위해 당일 근무하는 응급실 전담전문의 중 응급의료 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 사. **제18조의4**에 따른 중증응급환자가 내원하면 응급실 전담전문의가 직접 진료해야 한다. 다른 전문진료과목 전문의의 진료가 필요한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호출해야 하며, 호출된 전문의는 해당 환자를 신속히 진료해야 한다.
- 아. 중증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것을 최소화하되, 불가피하게 이송하는 경우 당일의 응급의료 책임자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가 직접 이송을 결정해야 하며, 이를 중앙응급의료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 자. **바목** 및 **사목**에 따른 중증응급환자의 적정시간 내 진료, 다른 의료기관에서 이송되어온 중증응급환자의 적극적 수용 등에 대하여, 법 제1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평가를 매년 통과해야 한다.
- 차. 응급실 근무자 등은 소속, 전문과목, 면허·자격, 성명이 표기된 이름표를 달아야 하며, 면허·자격에는 전문의, 레지던트, 인턴,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이 구체적으로 표기되어야 한다.

카.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책임 진료와 권역 내 재난·교육, 구급대에 대한 의료지도 등 그 밖에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타. 법 제15조의3에 따른 비상대응매뉴얼에 규정된 다수사상자 사고 대응을 위한 재난의료지원팀을 3개 이상 조직하되, 각 팀은 의사 1명 이상,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2명 이상,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1명 이상으로 각각 구성한다.

### 3. 시설기준·장비기준·인력기준

#### 가. 시설기준

1) 응급실 시설은 서로 인접하고 다른 의료시설과 구별되어야 하며, 응급실과 응급전용 중환자실·입원실 및 수술실, 검사실·중재실·MRI실 등은 수평 또는 수직으로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근접성을 갖추어 설치·운영해야 한다.

2) 감염병환자를 위한 음압격리병상 및 일반격리병상은 응급실 인근에 다른 구역과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소아환자를 위한 응급실을 별도 운영하는 경우 소아환자 진료구역도 응급실 다른 구역과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

3) 응급실 입구 환자 분류소에서 감염의사환자를 선별하고, 일반 응급환자와 동선을 분리하여 음압격리병상 등에서 격리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4) 응급실 전용 시설기준

시 설	시 설 기 준	비 고
가) 환자 분류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환자진입구와 인접하여 설치할 것</li> <li>중증도 분류에 필요한 장비와 비품을 갖추어 것</li> <li>충분한 환기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li> </ul>	감염의사환자를 위한 마스크 등 보호장구를 비치할 것
나) 소생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소 20㎡의 전용면적을 확보하고, 각각의 내변이 3m 이상이 되도록 할 것</li> </ul>	환자 진입구 및 구급차출입구와 인접되게 설치할 것
다) 처치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소 20㎡의 전용면적을 확보하고, 각각의 내변이 3m 이상이 되도록 할 것</li> <li>감염방지를 위해 손세척이 가능할 것</li> </ul>	
라) 응급환자 진료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각 병상마다 상지·하지 전동방식 높이조절 기능 및 시각적 차폐 시설을 갖추어 것</li> <li>산소와 음압을 공급하는 설비를 갖추어 것</li> </ul>	병상 간 간격은 1.5m 이상을 확보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병상 이상을 확보할 것</li> </ul>	
<p>마)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입통제가 가능한 별도의 구역으로 구성하고 무정전 시스템을 갖출 것</li> <li>• 각 병상마다 상지·하지 전동방식 높이조절 기능 및 시각적 차폐 시설을 갖출 것</li> <li>• 산소, 음압, 고압공기를 공급하는 설비를 갖출 것</li> <li>• 8병상 이상을 확보할 것</li> </ul>	
<p>바) 음압격리 병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부로부터 완전히 밀폐될 것</li> <li>• 필터링된 급기·배기, 음압제어 및 환기가 가능한 시설을 갖출 것</li> <li>• 각 병상은 1인 격리실로 설치할 것</li> <li>• 내부 전체를 관찰할 수 있는 창문 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할 것</li> <li>•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하거나 손세척을 할 수 있는 전실을 갖출 것</li> <li>• 2병상 이상을 확보할 것</li> </ul>	<p>일반격리병상은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병상 수에 포함됨</p>
<p>사) 일반격리 병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부로부터 완전히 차폐될 수 있을 것</li> <li>• 각 병상은 1인 격리실로 설치할 것</li> <li>• 내부 전체를 관찰할 수 있는 창문 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비를 갖출 것</li> <li>• 3병상 이상을 확보할 것</li> </ul>	
<p>아) 소아응급환자 진료구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병상마다 시각적 차폐 시설을 갖출 것</li> <li>• 산소와 음압을 공급하는 설비를 갖출 것</li> <li>• 3병상 이상을 확보할 것</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아전문응급센터가 아닌 경우에만 적용</li> <li>• 병상 간 간격은 1.5m 이상을 확보할 것</li> </ul>
<p>자) 방사선실 • 일반촬영실 • CT촬영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체 전 부위 촬영이 가능할 것</li> <li>• 산소와 음압 공급설비를 설치할 것</li> </ul>	<p>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인근에 설치할 것</p>
<p>차) 응급전용 입원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0병상 이상을 확보할 것. 다만, 30병상 중 12병상은 전문진료과의 입원실 내 응급전용 병</li> </ul>	<p>당일 응급의료 책임자가 입원·퇴원</p>

	<p>상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4의 입원실 규정을 준수할 것</li> </ul>	<p>을 결정할 것. 다만, 전문진료과 내 병상인 경우 입퇴원시 당일 응급의료 책임자의 동의를 받을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문진료과 내 병상은 응급전용임을 표기하고 환자 대장을 관리할 것</li> </ul>
카) 응급전용 중환자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병상 이상을 확보할 것. 다만, 20병상 중 10병상은 전문진료과의 중환자실내 응급전용 중환자병상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li> <li>「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4의 중환자실 규정을 준수할 것</li> </ul>	
타) 보호자 면담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외부로부터 시정각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li> <li>환자의 상태 설명을 위한 시설을 갖출 것</li> </ul>	
파) 전용 주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응급실 입구에 인접하고, 평면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할 것</li> <li>응급환자 전용 표기가 되어 있을 것</li> </ul>	<p>구급차 2대 이상 주차 공간을 확보할 것</p>
하) 보호자 대기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소 84㎡의 전용면적을 갖출 것</li> <li>입원환자의 인원수에 따라 면적을 조정할 수 있음</li> </ul>	<p>25명 이상이 동시에 대기할 수 있는 공간으로 편의시설설치가 가능할 것</p>
거) 재난 및 응급의료 지원실	<p>재난, 교육, 의료지도 등 권역 내 응급의료 업무를 하기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질 관리를 위한 컨퍼런스 등을 수행할 것</li> <li>응급실과 인접하지 않은 공간에 설치 가능함</li> </ul>

5) 의료기관 시설기준

시 설	시 설 기 준	비 고
-----	---------	-----

가) 수술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4의 수술실 규정을 준수할 것</li> <li>기능유지를 위한 인력을 갖출 것</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4시간 운영할 것</li> <li>응급환자에 우선 사용되도록 할 것</li> </ul>
나) 검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혈액성분검사(CBC), 혈액화학검사(Chemistry), 동맥혈 가스분석(ABGA) 및 요검사(U/A)가 가능할 것</li> <li>심근효소검사, 혈액응고검사가 가능할 것</li> </ul>	
다) MRI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체 전 부위의 촬영이 가능할 것</li> <li>산소와 음압을 공급하는 설비를 설치할 것</li> </ul>	
라) 중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위내시경실, 담관내시경실, 기관지내시경실 각각 1실 이상 갖출 것</li> <li>혈관조영실, 심혈관조영실 각각 1실 이상 갖출 것</li> <li>각 시설은 산소와 음압을 공급하는 설비를 설치할 것</li> </ul>	
마) 혈액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BO 및 Rh Typing, 교차 시험(Cross Matching), Coomb's Test 검사가 가능할 것</li> </ul>	
바) 주산기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생아실을 갖출 것</li> <li>분만실을 갖출 것</li> </ul>	

나. 장비기준

1) 응급실 전용 장비

품명	개 수(단위: 개)						비고
	일반 구역	소아 구역	중증 구역	소생실· 처치실	중환자실	격리 병상	
가) 12유도 심전도기	1		1				
나) 심장충격기	1	1 (소아용 패드구비)	1	1	2	1	전원연결 없이 사용, 동기화 심 전환 가능할 것
다) 인공호흡기			5병상당	1실당	3병상당	5병상당	호흡방식 조절

			1	1	1	1	가능, 경고장치가 있을 것
라) 무 영 등				1실당 1			
마) 이동 X-선 촬영기	1					1	
바) 이동식 초음파 검사기	1						심초음파검사 가능할 것
사) 환자 감시 장치	5병상당 1	5병상당 1	1병상당 1	1실당 1	1병상당 1	1병상당 1	심전도, 혈압, 혈중산소포화도 측정이 가능할 것
아) 이동환자 감시장치	1						
자) 기도흡입기	1병상당 1	1병상당 1	1병상당 1	1실당 1	1병상당 1	1병상당 1	
차) 산소량 조절장치	1병상당 1	1병상당 1	1병상당 1	1실당 1		1병상당 1	
카) 급속혈액가온주입기			1		1		
타) 정맥 주입기	5병상당 1	5병상당 1	1병상당 1	1실당 1	1병상당 1	1병상당 1	약물 투여량의 정량 조절이 가능, 경고장치가 있을 것
파) 보온포				1실당 1	1		가온이 가능할 것
하) 중심체온 조절유도기				1			
거) 심부체온 측정장비				1			
너) 이동 심근 효소측정기			1				
데) 연령별 기도 확		1					

보 장비 및 보조호흡 도구							
러) 소아를 위한 기타 연령별 기구·소모품	1						
머) 무선장비 및 전산장비	1					무선통신 가능한 단말기 구비, 응급의료정보 입력·조회	
버) 구급차	특수구급차 1대 이상을 포함한 구급차 2대					응급실과 교신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출 것	

2) 의료기관 내 확보해야 하는 장비

장 비	기 준
가) 뇌압감시장비	24시간 사용이 가능해야하며, 응급환자에 우선적으로 사용될 수 있게 할 것
나) 인공심폐순환기(ECMO)	
다) 지속적 신 대체 요법(CRRT) 장비	
라) 인큐베이터	

다. 인력기준

○ 응급실 전담 인력기준

인 력	인력기준	비 고
가) 의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응급실 전담 응급의학전문의: 5명 이상</li> <li>응급실 전담전문의: 전년도 응급실 내원 환자수가 30,000명을 초과하는 경우, 1명을 확보하고 매 5,000명마다 1명을 추가 확보할 것</li> <li>※ 응급실 전담전문의는 응급의학과, 내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마취통증의학과, 영상의학과, 가정의학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응급실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내에는 24시간 응급의학전문의 1명 이상이 상주할 것</li> <li>응급실 응급환자 진료구역 내에는 24시간 의사 1명 이상이 상주할 것</li> </ul>

	전문의 중에서 확보할 것	
나) 간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응급실 전담 간호사 30명 이상</li> <li>• 전년도 응급실 내원 환자수가 30,000명을 초과하는 경우 3명을 추가 확보하고, 매 5000명마다 3명을 추가 확보할 것</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응급전용 중환자실 및 응급전용 입원실과 별도로 할 것</li> </ul>
다) 응급구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난, 교육, 전원관리, 응급처치 등을 위해 1급 응급구조사 5명 이상</li> <li>• 구급차 운영을 위해 구급차 1대당 2명 이상</li> </ul>	구급차 및 관련 인력은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
라) 그 밖의 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간호사, 응급구조사 또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면허·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응급의료 정보관리 전담인력 4명 이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4시간 1명 이상이 상주할 것</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응급의료종사자 및 환자의 안전을 위한 청원경찰 또는 경비원 등의 보안인력 1명 이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4시간 응급실 전담으로 1명 이상이 상주할 것</li> </ul>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제17조제2항 관련)

1. 진료기능

가. 응급실 진료

- 1) 아래의 처치가 상시 가능하다.
  - 기도처치: 기관내삽관
  - 호흡처치: 기계적 인공호흡, 흉관삽관
  - 순환처치: 제세동, 중심정맥삽관
  - 기타처치: 위세척
- 2) 아래의 촬영(검사)과 판독이 상시 가능하다.
  - CT, 단순 방사선 촬영, 12유도 심전도, 심장초음파

나. 의료기관 진료

- 1) 아래의 수술 및 시술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 심장쇼크, 심혈관조영, 심혈관계·호흡기계·신경계 등 중환자관리
  - 뇌·복부 응급수술, 뇌·복부혈관조영
  - 위내시경
  - 신장투석, 지속적 신대체 요법(CRRT)
- 2)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역량을 갖추고 해당 중증응급질환으로 내원한 환자에 대하여 필요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3) 지정 신청일 이전 3년 이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증응급질환군에 속하는 응급환자를 수용한 실적이 있어야 하며 지정일 기준 해당 진료 가능한 진료과목을 갖추고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어야 함

2. 일반 운영기준(법 제30조에 따른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업무)

가.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장은 응급환자의 진료를 위해 응급실과 각 전문진료과목의 당직 인력을 확보하고 관련 부서 간 협력체계를 가동해야 한다.

나.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장은 가용가능한 응급의료 자원의 현황, 주요 응급질환별 수용가능 여부, 응급환자의 내원 및 퇴실에 대한 정보를 법 제15조에 따라 중앙응급의료센터로 전송해야 한다.

다.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장은 감염의사환자의 선별, 음압격리병상 등 감염예방 시

설의 운영, 동선분리 및 감염예방활동, 보호자 및 방문객 출입통제 등 응급실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

라.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장은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조치 및 제18조의4에 따른 중증도 분류의 지도 및 시행을 위해 당일 근무하는 응급실 전담전문의 중 응급의료 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마. 제18조의4에 따른 중증응급(의심)환자가 내원하면 응급실 전담전문의가 직접 진료해야 한다. 다른 전문진료과목 전문의의 진료가 필요한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호출해야 하며, 호출된 전문의는 해당 환자를 신속히 진료해야 한다.

바. 응급의료책임자와 환자를 담당한 의사는 응급의료기관의 의학적 역량으로 환자에게 필요한 응급의료를 제공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다른 병원으로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경우 당일의 응급의료 책임자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가 직접 이송을 결정해야 하며, 이를 중앙응급의료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사. 라목 및 마목에 따른 중증응급(의심)환자의 적정시간 내 진료 등에 대하여, 법 제1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평가를 매년 통과해야 한다.

아. 응급실 근무자 등은 소속, 전문과목, 면허·자격, 성명이 표기된 이름표를 달아야 하며, 면허·자격에는 전문의, 레지던트, 인턴,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이 구체적으로 표기되어야 한다.

### 3. 시설기준·장비기준·인력기준

#### 가. 시설기준

1) 응급실 시설은 서로 인접하고 다른 의료시설과 구별되어야 하며, 응급실과 중환자실·입원실 및 수술실, 검사실·중재실·MRI실 등은 수평 또는 수직으로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근접성을 갖추어 설치·운영해야 한다.

2) 감염병환자를 위한 음압격리병상 및 일반격리병상은 응급실 인근에 다른 구역과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

3) 응급실 입구 환자 분류소에서 감염의사환자를 선별하고, 일반 응급환자와 동선을 분리하여 음압격리병상 등에서 격리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구분	개수	단위면적 (m <sup>2</sup> )	총면적 (m <sup>2</sup> )	비고
가. 환자분류소	1			· 환자진입구와 인접하여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할 것</li> <li>• 증증도 분류에 필요한 장비와 비품을 갖출 것</li> <li>• 충분한 환기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li> <li>• 감염병 의심환자를 위한 마스크 등 보호 장비를 비치할 것</li> </ul>
나. 응급환자진료구역	1	110	1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병상(음압격리병상 및 일반격리병상을 포함한다) 이상을 확보할 것</li> </ul>
다. 음압격리병상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부로부터 완전히 밀폐될 것</li> <li>• 필터링된 급기·배기, 음압제어 및 환기가 가능한 시설을 갖출 것</li> <li>• 각 병상은 1인 격리실로 설치할 것</li> <li>• 내부 전체를 관찰할 수 있는 창문 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할 것</li> <li>•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하거나 손세척을 할 수 있는 전실을 갖출 것</li> </ul>
라. 일반격리병상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부로부터 완전히 차폐될 것</li> <li>• 각 병상은 1인 격리실로 설치할 것</li> <li>• 내부 전체를 관찰할 수 있는 창문 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할 것</li> <li>• 음압격리병상 1병상 이상을 포함한 격리병상을 3병상 이상 갖출 것</li> </ul>
마. 검사실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비기준에 따른 장비를 이용하여 검사하기 위한 충분한 공간을</li> </ul>

				<p>확보할 것. 다만, 종합병원의 검사실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검사실을 두지 않을 수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4시간 혈액 성분 및 화학 검사, 동맥혈가스분석, 요검사를 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출 것</li> </ul>
바. 방사선실(일반촬영실)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래환자용과 구분되는 별도의 시설일 것</li> </ul>
사. 처치실	1	15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간단한 수술 및 처치를 할 수 있는 처치대 1병상을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일 것</li> </ul>
아. 응급전용 입원 병상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료기관 전체 병상 중 3병상 이상을 응급전용 입원 병상으로 지정·운영하며, 응급전용임을 표기하고 환자 대장을 관리할 것</li> <li>•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4의 입원실 규정을 준수할 것</li> <li>• 입퇴원시 당일 응급의료 책임자의 동의를 받을 것</li> </ul>
자. 응급전용 중환자 병상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료기관 전체 병상 중 2병상 이상을 응급전용 중환자 병상으로 지정·운영하며, 응급전용임을 표기하고 환자 대장을 관리할 것</li> <li>•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4의 중환자실 규정을 준수할 것</li> <li>• 입퇴원시 당일 응급의료 책임자의 동의를 받을 것</li> </ul>
차. 원무행정실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합병원과 별도로 입퇴원 및 의료보험청구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면적을 확보할 것</li> </ul>
카. 의사당직실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사 2명 이상이 숙식할 수 있</li> </ul>

				는 공간일 것
타. 보호자대기실	1			• 20명 이상이 동시에 대기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대기의자, 호출 시설 등 편의시설의 설치가 가능할 것
파. 주차장				• 구급차 2대를 포함한 4대의 차량을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것

비고: 위의 개수·단위면적 및 총면적 기준은 최소기준을 의미함.

#### 나. 인력기준

인력	인력기준	비고
가. 의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응급실 전담전문의 4명 이상</li> <li>• 응급실 전담전문의: 전년도 응급실 내원 환자수가 30,000명을 초과하는 경우, 1명을 확보하고 매 7,000명마다 1명을 추가 확보할 것</li> <li>※ 응급실 전담전문의는 응급의학과, 내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마취통증의학과, 영상의학과, 가정의학과 전문의 중에서 확보할 것</li> </ul>	• 24시간 전담전문의 1명 이상이 근무할 것
나. 간호사	• 응급실 전담간호사 15명 이상	• 24시간 응급실 전담간호사 3명 이상이 근무할 것
다. 그 밖의 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간호사, 응급구조사 또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면허·자격을 가진 사람 1명 이상</li> <li>• 응급의료종사자 및 환자의 안전을 위한 청원경찰 또는 경비원 등의 보안 인력 1명 이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응급의료 정보 관리 및 제공 업무를 전담할 것</li> <li>• 24시간 응급실 전담으로 1명 이상이 상주할 것</li> </ul>

다. 장비기준

장비명	기준
가. 심장충격기	1대 이상
나. 인공호흡기	1대 이상
다. 주입기(Infusion Pump)	5병상마다 1대 이상
라. 초음파검사기	1대 이상
마. 환자감시장치	5병상마다 1대 이상
바. 이동환자감시장치	1대 이상
사. 부착형흡인기	1병상마다 1대 이상
아. 부착형산소(Wall O <sub>2</sub> unit)	1병상마다 1대 이상
자. 급속혈액가온주입기 (Rapid infusion warmer)	1대 이상
차. 보온포	1대 이상
카. CT촬영기	1대 이상. 다만, 종합병원의 CT촬영기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갖추지 않을 수 있음
타. 일반 X-선 촬영기	1대 이상
파. 이동 X-선 촬영기	1대 이상
하. 특수구급차	1대 이상. 다만,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구급차의 운용을 위탁한 경우에는 갖추지 않을 수 있음
거. 무선통신설비 및 전산시설	응급의료지원센터와 교신할 수 있는 통신설비와 응급의료정보의 제공을 위한 전산장비 등의 시설을 갖추어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lt;신 설&gt;</u></p>	<p><u>제5조의2(응급의료 실태조사) ①</u></p> <p><u>법 제13조의7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u>1. 응급의료 수요 및 응급의료 서비스 이용 형태 등에 관한 사항</u></li> <li><u>2. 응급의료기관등의 시설, 장비 및 인력 등의 현황에 관한 사항</u></li> <li><u>3.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구급 활동에 관한 사항(「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구급활동일지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구급활동에 관한 세부 상황표, 그 밖에 구급활동상황 기록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u></li> <li><u>4. 그 밖에 응급의료 정책에 수립에 필요한 사항</u></li> </ol> <p><u>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u></p>

<p>제13조의2(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재난 대비 및 대응 업무) (생략)</p> <p>1. ~ 4. (생략)</p> <p>5. 그 밖에 법 제15조의2에 따른 비상대응매뉴얼로 정하는 업무</p>	<p><u>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태조사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u></p> <p>③ <u>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응급의료 관계 연구기관, 법인·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u></p> <p>④ <u>실태조사는 문헌조사, 통계조사, 설문조사,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화, 전자우편,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할 수 있다.</u></p> <p>⑤ <u>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가 완료된 경우 그 결과를 지체없이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해야 한다.</u></p> <p>제13조의2(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재난 대비 및 대응 업무) (현행과 같음)</p> <p>1. ~ 4. (현행과 같음)</p> <p>5. -----제15조의3제1항----- ----- --</p>
<p><u>&lt;신 설&gt;</u></p>	<p>제18조의2(응급의료기관 운영상</p>

항 통보) ①법 제31조의2제5항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중앙응급의료센터에 통보해야 하는 정보는 다음과 같다.

1. 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에 따라 유지·운영 중인 시설의 사용가능 병상 수와 장비 사용가능 현황

2. 응급의료 제공을 위한 인력 운영 현황(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당직응급의료종사자를 포함한다)

3. 법 제48조의2제2항에 따라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사유(법 제48조의2제2항에 따라 통보하여야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4. 주요 중증응급질환의 수술 또는 처치 가능 현황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②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중앙응급의료센터로 통보한 정보에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

제18조의2 ~ 제18조의4 (생략)

<신설>

다.

제18조의3 ~ 제18조의5 (현행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4까지와 같음)

제39조의3(응급의료 전용회선 운영 등) ①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라 응급의료 전용회선을 개설·운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24시간 상시 수신 및 발신이 가능할 것

2. 송신인의 전화번호 확인이 가능할 것

3.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자와의 통신 이외의 목적으로 응급의료 전용회선을 활용하지 않을 것

4.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라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자와

통신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기록하여 보존할 것

가. 수용능력 확인을 요청하는 자의 소속과 성명

나. 수용능력 확인 대상 응급환자의 주요 정보

다.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

라. 그 밖에 응급환자 수용능력 확인 및 인계를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법 제48조의3제2항에서 “응급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센터를 말한다.

③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48조의3제3항에 따라 응급의료 전용회선을 개설하거나 변경한 경우 보건복지부에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신고 내용을 소방청장 및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 전용회선의 개설·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응급의료 전용회선의 개설·운영, 담당부서 지정 또는 담당인력 배치, 응급의료 전용회선의 개설 또는 변경의 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